

COVID -19 Newsletter

April 14, 2020

Covid-19 확산에 따른 조세 관련 세정지원정책

1. 국세청 차원의 세정지원

가. 추진배경 및 지원대상

Covid-19의 확산으로 납세자들에게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바, 국세청은 Covid-19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직권으로 또는 개별신청에 따라 신고·납부기한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유예, 세무조사 착수유예(연기·중지 포함) 등의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직권유예 대상은 (i) 관광업, 여행업, 공연관련업, 음식숙박업, 여객운송업, 병의원(소비성 유흥업 등 제외), (ii) 확진환자 발생, 방문지역 및 우한귀국교민 수용지역(아산 경찰인재개발원, 진천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 인근 상권지역) 납세자로, 구체적 기준은 전국 7개 지방국세청, 125개 세무서에 설치되는 < Covid-19 세정지원 전담대응반>을 통해 추후 결정할 예정입니다.

개별신청 대상은 (i) 중국교역 중소기업(수출기업, 부품·원자재 수입기업), (ii) 중국 현지 지사·공장운영, 기타 현지 생산중단으로 차질이 발생한 국내 생산업체 등 지원이 필요한 납세자로서, 직권유예 기준에 미달하는 납세자도 개별신청을 통해 지원 가능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나. 세정지원 방안

국세청은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납세기한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유예를 규정하고 있는 국세기본법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국세징수법 제15조 제1항 등에 근거하여, 세정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① 감염병 특별재난지역(대구, 경산, 봉화, 청도) 및 Covid-19 직접 피해사업자{환자발생, 경유사업장, 우한귀국교민 수용지역(아산, 진천, 이천 등) 피해업종}의 법인세 신고납부기한을 1개월 연장하고 해당 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을 1개월(특별재난지역의 경우), 3개월(직접 피해사업자의 경우) 직권으로 연장하고, 그 밖의 사업자도 신고납부 기한연장 신청시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하며, ② 이미 고지서를 발부한 국세에 대하여도 그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고, ③ 중소기업, 영세사업자, 혁신지원기업, Covid-19 피해기업 등에 국세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법정지급기한인 2020. 5. 12.보다 앞당겨 2020. 4. 29.까지 지급할 예정이고, ④ 체납액이 있더라도 압류된 부동산의 매각을 보류하는 등 체납처분 집행을 최장 1년까지 유예할 예정입니다.

또한 국세청은 천재지변 등의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7에 근거한 세무조사 연기사유에 해당하는바, 세무조사가 사전통지되었거나 진행 중인 경우에는 부과제척기간 만료가 임박한 경우를 제외하고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세무조사를 연기하거나 중지하며, 대구경북지역 납세자에 대한 새로운 세무조사 착수는 전면 보류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2. 기획재정부 차원의 세정지원

가. 추진배경 및 지원대상

2020. 3. 17. 국회에서 Covid-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이 의결되었고, 2020. 3. 23. 공포·시행되었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i) 감염병 특별재난지역 소재 중소기업 소득, 법인세 30~60% 감면, (ii) 소규모 개인사업자 (연매출 8,000만 원 이하) 부가가치세 한시 감면, (iii)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납부면제 기준금액 한시 상향(3,000만 원→4,800만 원), (iv)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하여 인하액의 50% 세액공제, (v) 2020. 3. 1.부터 6.30.까지 승용차 구입시 개별소비세의 70% 한시 인하, (vi) 2020. 3.부터 6.까지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율 2배 한시 확대, (vii) 기업 접대비 한도 한시 확대 등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조특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및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2020. 3. 23.부터 3. 30.까지 입법예고기간을 가진 뒤 2020. 4. 초 시행될 예정입니다.

나. 감염병 특별재난지역 소재 중소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1) 감염병 특별재난지역 소재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소득세·농어촌특별세 감면

Covid-19 확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내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감염병 특별재난지역 소재 중소기업에 대하여 2억 원을 한도로 소기업(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와 동일하게 업종별 매출액 10~120억 원인 기업) 60%, 중기업 30% 소득세·법인세 감면을 실시하고, 감염병 특별재난지역 소재 중소기업 세액감면에 대한 농어촌 특별세 비과세를 실시하는 것으로 법령이 개정되었습니다. 다만, ①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②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③ 변호사업·회계사업 등 전문직 서비스업, ④

블록체인 기반 및 암호화자산 매매 및 중개업, ⑤ 금융 및 보험업(보험모집인은 제외)은 감면업종에서 제외됩니다. 본 감면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 다른 세액감면·공제제도와는 중복적용이 불가하나, 고용증대세제와는 중복적용이 가능합니다.

(2)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세제지원 요건 신설 등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해외사업장 폐쇄, 축소(생산량 50% 이상 감축) 후 국내 사업장 신설뿐 아니라 기존 사업장을 증설하는 경우에도 유턴기업 세제지원을 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여기서 ‘증설’이란 공장의 연면적이 증가하거나(공장의 경우), 사업용 고정자산의 수량 증가 또는 사업장의 연면적이 증가한 경우(공장 외 사업장의 경우)를 의미하고, 구분경리를 통해 기존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과 증설된 부분에서 발생한 소득이 구분되는 경우 소득세, 법인세, 관세 세액감면이 가능합니다. 기존 사업장 증설의 경우 해외 사업장의 축소 수준에 따라 감면대상 소득의 한도가 결정되는데 다만 증설한 부분을 폐쇄한 경우에는 감면세액 및 이자상당 가산액이 추정됩니다.

(3)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한시 감면

Covid-19로 어려움에 처한 영세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2020년 말까지 과세기간(6개월)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4천만 원 이하인 개인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간이과세자 수준(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5%, 소매업, 도매업, 음식점업 10%, 농림어업, 제조업, 숙박업, 운수업, 정보통신업 20%, 건설업, 그 밖의 서비스업, 기타 업종 30%)으로 감면하게 됩니다. 다만, 부동산임대·매매업, 유흥주점업은 제외됩니다.

(4) 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한시 면제

Covid-19로 어려움에 처한 영세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2020년 말까지 간이과세자에 대한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을 현행 연매출 3,000만 원에서 4,800만 원으로 한시 상향하는 것으로 개정되었습니다. 다만,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배제와 동일하게 부동산임대업 및 유흥주점업은 적용 제외됩니다.

(5)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율 2배 한시확대

경제활성화를 위한 민간소비 유도를 목적으로 2020. 3. 내지 6. 사용분에 대한 공제율을 2배 확대하는 것으로 개정되었습니다.

(6) 기업접대비 한도 한시 확대

기업접대비 손금산입 한도는 기본한도(일반기업 1,200만 원, 중소기업 3,600만 원) + 추가한도로 구성되어 있는데, 기업지출 확대에 따른 소상공인 등 매출 확대 선순환을 유도하기 위하여 2020

과세연도부터 수입금액별 추가한도가 아래와 같이 상향됩니다.

수입금액 구간	추가한도	
	개정 전	개정 후
100억 원 이하	0.3%	0.35%
100억 원 초과 500억 원 이하	3,000만 원+(100억 원 초과 분의 0.2퍼센트)	3,500만 원+(100억 원 초과 분의 0.25퍼센트)
500억 원 초과	11,000만 원+(500억 원 초과 분의 0.03퍼센트)	13,500만 원+(500억 원 초과 분의 0.06퍼센트)

(7)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

민간의 자발적 임대료 인하운동에 대한 세제지원을 위하여 2020년부터 아래 요건을 갖추고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의 임대료 인하액에 대한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 임대인: 상가건물에 대한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부동산임대사업자
- 임차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i) 동일상가건물을 2020. 1. 31. 이전부터 계속 임차하고, (ii) 사행성, 소비성 업종 등을 영위하지 않으며, (iii) 임대인과 특수관계인이 아니어야 하며, (iv) 사업자등록을 한 자여야 함
- 대상건물: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상가건물, 업무목적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로 임차인이 영업목적에 계속 사용하는 것
- 공제금액: 2020년 상반기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소득세, 법인세에서 세액공제
- 공제제외: 2020. 1. 31. 이전 기존 계약 적용시 2020. 2. 1.부터 12. 31. 중 임대료·보증금을 기존 임대차계약 금액보다 인상한 경우, 2020. 2. 1. 이후 계약 갱신시 2020. 2. 1.부터 12. 31. 중 임대료를 기존 임대차계약에 따른 금액보다 5% 초과하여 인상한 경우, 개별소비세법상 과세유흥 장소 등

상기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언제든지 아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더욱 자세한 내용을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ontacts



조 춘
파트너변호사

☎ 02-316-4213

✉ ccho@shinkim.com



이민현
파트너변호사

☎ 02-316-1639

✉ mhylee@shinkim.com

SHIN & KIM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세종 뉴스레터의 게재된 내용 및 의견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며, 어떤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적 의견을 드리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The content and opinions expressed within Shin & Kim LLC's newsletter are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should not be considered as rendering of legal advice for any specific matter.